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건강가정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제공자 보호 강화를 위해
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를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
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,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고유식별정보를
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.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전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(법 제34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담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,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,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, 다문화가족·한부모가족·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,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
2. 법 제35조에 따른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가</u> <u>와 지방자치단체의 장(법 제34</u> <u>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담받은</u> <u>자를 포함한다) 또는 법 제35조</u> <u>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</u> <u>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</u> <u>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</u> <u>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</u> <u>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</u> <u>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</u> <u>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</u> <u>수 있다.</u> 1. <u>법 제34조의2에 따른 가족상</u> <u>담 및 가족교육 사업, 가족친</u> <u>화 사회환경 조성사업, 아이돌</u> <u>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, 다</u> <u>문화가족 · 한부모가족 · 조손</u> <u>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</u> <u>화 지원 사업, 다문화가족의</u> <u>사회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</u> <u>무</u> 2. <u>법 제35조에 따른 가정문제</u> <u>의 예방 · 상담 및 치료, 가족</u> <u>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</u>

	<u>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189